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허권등 침해 판결 이행 확인 제도 도입〉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743호, 제2216744호, 제2216745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1.
3. 회부연월일 : 2026. 2. 1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1.
3. 회부연월일 : 2026. 2.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1.
3. 회부연월일 : 2026.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판

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3건의 개정안은 각각 특허권·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침해금지 판결이행 의무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① 지식재산처장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자료제출·보고 및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6조의3(판결등의 이행 확인)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하여 법원이 제126조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등의 상대방(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의 보유·유통 현황 2. 판결등에서 명한 조치의 이행 내용 및 완료 여부 3.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에 관한 이행

제232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징수한다.	<u>조치의 증빙자료</u>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는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과 자료 제출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현황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	제30조(「특허법」의 준용) -----

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 제126조의3, 제128조-----.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4조의8(판결등의 이행확인)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결등의 상대방(이하 “의무이행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한 판결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판결등 3.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에 관한 이행조치의 증빙자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는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생략)	<u>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과 자료 제출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u> 제20조(과태료)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황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

특허권 침해금지¹⁾ 판결은 단순한 권리 확인에 그치지 않고 생산·판매 중단, 제품 폐기 등 강제집행력을 수반하는 이행판결에 해당하고²⁾,

- 1)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2)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가지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그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이행판결에서 이행청구권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한) 집행

권한 있는 기관(검사)에 의해 강제로 판결을 집행하는 형사사건³⁾과 달리 특허소송 등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의 이행이 1차적으로 사인인 이행의무자에 의해 임의로 행하여짐.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온라인 판매의 지속, 우회 생산·유통 등으로 특허권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고, 침해중단 여부에 대한 정보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가 피해여부 및 피해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특허권 침해금지 판결 이후 침해행위의 중단 여부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이 판결이행 의무자에게 판결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판결의 실효성 제고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력이 발생한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소송은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한다.”

조춘련·정차호,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성균관법학」(2024.9.), p.461

3) 「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 판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업무 영역인 점과 민사분쟁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부인 지식재산처가 당사자의 요청 없이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⁴⁾.

또한 현재 유사 입법례가 부재⁵⁾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여타 행정부처별 업무와 관련해서도 사법 판단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과 감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4) 주: 예컨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나 유아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5) 주: 행정부가 실시하는 “이행확인 제도”는 다수의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판결이 아닌 행정부의 의무 부과나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그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외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각 개정안은 보고·자료제출 요구 불응 및 현장 확인 거부·방해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자가 확보하기 곤란한 침해 물품의 “유통 현황”의 미제출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및 과태료 액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특허법 개정안 제126조의3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제14조의8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과 자료 제출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임 규정의 중복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각 개정안은 판결이행 확인 제도가 중복조사 제한을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⁶⁾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① 「행정조사기

6)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법」 행정조사⁷⁾와 판결이행 확인을 위한 조사는 그 취지와 내용이 상이하고,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다른 행정기관이 먼저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처리를 규정하는데 특허침해 판결이행 확인 제도는 지식재산처 외에 다른 행정기관이 조사를 실시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① 국내외 유사 입법례가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② 특허권 침해자도 알기 어려운 ‘유통 현황’에 대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법무부는 ① 법원이 아닌 지식재산처장이 판결 이행 여부를 당사자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행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는 점, ② 사법 판단에 대한 행정청 감독권의 확장이 광범위해질 수 있는 점, ③ 본 개정안을 선례로 추후 타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수 있는 점, ④ 과태료의 부과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7)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원행정처는 확정판결 이후 계속되는 특허권 등의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의 위하적 효과⁸⁾⁹⁾에 따라 판결 등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58

8) 위하적 효과: 형벌이나 기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

9)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